

	<h1>보도참고자료</h1>	
<h2>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h2>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			
책임자	안창국 과장 (2156-9900)	담당자	송병관 사무관 (2156-9898)	
	오용석 실장 (3145-6700)		김봉한 팀장 (3145-6710)	
배포일	2016. 2. 4(목)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11매

제 목 :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① 금융위·금감원은 '15.11.30일 발표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에 따라 지난 '16.1.6일 예고했던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확정하여 '16.2.5일부터 시행

○ 이는 소규모 펀드가 지닌 비효율성, 관리소홀 등으로 소규모 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② 동 행정지도는 「금융규제 운영규정」 절차에 따라 행정지도 예고 기간 ('16.1.6~'16.1.25, 20일)중 제출된 업계의 의견 중 소규모 펀드 정리 방향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의견은 상당 부문 수용하여 확정하였음

① 최근 국내외 증시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기 발표된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 일정에서 1개월을 순차적으로 연장

* (예고안) '16.2월말부터 소규모 펀드 정리 실적 제출(2·5·8·11월) → (확정안) '16.3월말부터 정리 실적 제출(3·6·9·12월)

② 최근 소규모 펀드 임의 해지에 따라, 손실이 확정되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해지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임의해지 보다는 합병 및 모자 전환이 우선적으로 활용되도록 지도

- (해지 표준 절차) 2주 이상 유사 펀드로의 이동을 권유하고 1개월이 지난 후 해지

- (합병·모자형 전환 우대) 분기별 소규모 펀드 정리실적 산정 시 합병·모자형 전환 절차를 개시한 펀드는 정리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소규모 펀드 수에서 제외(이행 여부는 사후 점검)

③ 획일적 비율규제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펀드 수가 많지 않은 소형사의 경우 소규모펀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도 신규 펀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

* 공모추가형 펀드가 10개 이하이면서 소규모펀드 수가 5개 이하인 운용사

③ 금융위·금감원은 펀드 산업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동 행정지도에 따라 소규모 펀드 감축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

① 대표 펀드로의 자동 전환 약정 등을 활용하여 기존 소규모펀드 정리 뿐 만 아니라 신규로 소규모 펀드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

② 소규모 펀드 정리 과정에서 판매사와 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등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감독

③ 특히, 소규모가 아닌 펀드에 비해 운용·판매 비용이 80.5% 높은 소규모펀드의 비효율성을 감안 할 때, 소규모펀드를 지속 보유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적극 알려나갈 예정

* 소규모펀드에 계속 가입하고 있는 것 보다는 보다 규모가 있는 펀드로 갈아타는 것이 증시회복으로 손실이 회복되더라도 수익률 측면에서 우월

펀드 규모별 투자자가 지출하는 평균 운용·판매 비용 비교('15말 기준)

구 분	소규모 펀드(A)	非소규모 펀드(B)	A-B, 비용 비율(A/B)
펀드 규모 대비 비용(bp)	141.489	78.398	+63.091, (180.47%)

*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일반사무관리보수, 예탁결제 비용, 회계감사 비용, 증권거래비용

※ 첨부 :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 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 규준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넓게 들겠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 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및 제233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등에 따라 소규모 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모범규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1. 법 제182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이하 “자산운용사”라 한다).
2. 법 제12조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사”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펀드”란 법 제9조제18항의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공모추가형 펀드”란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 중 설정·설립일 이후에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3. “소규모 펀드”란 제2호에 해당하는 펀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펀드를 말한다.

4. “설정”이란 펀드 등록 이후 원본액, 주금, 지분증권 대금 등이 최초로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5. “임의해지”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규모 펀드를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펀드 합병”이란 법 제193조제2항 단서 및 영 제225조의2에 따라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규모 펀드를 다른 공모펀드와 합병하는 것을 말한다.
 7. “모펀드 이전”이란 법 제23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소규모 펀드의 재산을 신설된 하나의 모펀드에 이전하거나, 각 소규모 펀드의 재산을 이미 설정된 모펀드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 “부실자산펀드”란 부도발생 또는 소송 등으로 인하여 시장을 통해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운 자산에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펀드를 말한다.
- ② 그 밖에 이 모범규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 및 정의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규모 펀드 해소

제4조(소규모 펀드 산정기준) ① 자산운용사의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수는 최상위 펀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펀드가 소규모 펀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상위 펀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추가형 펀드 및 소규모 펀드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펀드를 제외한다.

1. 부실자산펀드

2.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정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는 개인연금펀드

④ 제1항에서 정하는 최상위펀드는 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 종류형 펀드(Multi-class Fund)인 경우는 운용펀드, 모-자(운용)-손(클래스) 구조의 펀드인 경우는 모펀드를 말한다.

제5조(소규모 펀드 비율) ① 소규모 펀드 비율은 공모추가형 펀드의 수에 대한 소규모 펀드 수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비율을 산정할 때 소규모 펀드 합병 또는 모펀드 이전 절차를 개시[영 제225조의2제2항(금융투자업규정 제7-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한다]한 펀드는 소규모 펀드의 수에서 제외한다.

제6조(정리계획 수립) ① 자산운용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규모 펀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2016년 3월말 소규모 펀드비율 19% 이내
2. 2016년 6월말 소규모 펀드비율 11% 이내
3. 2016년 9월말 소규모 펀드비율 7% 이내

4. 2016년 12월말 소규모 펀드비율 5% 이내

② 자산운용사는 정리계획 수립 시 판매사와 협의를 거쳐 정리방법 및 시기를 정하며, 퇴직연금펀드 및 연금저축펀드 등 세제혜택을 받는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연금사업자 및 판매사와 협의하여 투자자의 세제적격 요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산운용사는 '임의해지', '소규모 펀드 합병', '모펀드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정리계획을 수립한다.

④ 자산운용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정리계획을 같은 항 각 호의 기간말일 2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정리계획 이행) ① 자산운용사는 제6조제1항의 정리계획에 따라 해당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자산운용사는 소규모 펀드 정리 이행실적을 제6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별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매분기말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③ 이행실적 제출과 관련된 서식은 별지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신규등록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새로운 공모추가형 펀드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소규모 펀드가 아닌 모펀드의 자펀드 신설 및 클래스(Class) 추가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정리계획을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

출하지 않은 자산운용사

2. 제6조제1항의 정리지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산운용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공모추가형 펀드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운용 중인 공모추가형 펀드의 수가 10개 이하이면서 소규모 펀드 수가 5개 이하인 경우

2. 펀드의 최초 설정액이 50억원 이상임을 입증하는 경우

3. 그 밖에 자산운용산업 발전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자산운용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펀드 등록을 신청할 경우 투자계획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 억제) ① 자산운용사는 새로운 공모추가형 펀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펀드 설정 후 6개월간 펀드의 원본액, 주금,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 등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펀드는 동일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대표펀드로 자동 전환된다는 사실

2. 펀드 설정 1년 후에 소규모 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라 즉시 정리된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규모 펀드가 아닌 모펀드의 자펀드 신설 및 클래스 추가를 위

한 경우

2. 펀드의 최초 설정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입증 방법은 제8조제3항에 따른 방법을 준용한다.

제3장 판매회사의 협조 및 설명의무 준수 등

제10조(협조의무) ① 판매사는 자산운용사가 수립한 소규모 펀드 정리지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펀드를 임의해지 하는 경우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투자자에게 유사펀드로 이동을 권유하고,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해지한다.

제11조(투자권유의 제한) 판매사는 소규모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를 자제하여야 한다.

제12조(소규모 펀드 현황공시) ① 협회는 자산운용사 및 판매사별 소규모 펀드 현황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공시한다.

② 소규모 펀드 현황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할 항목은 협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기타사항) 소규모 펀드 정리와 관련하여 이 모범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 펀드 해소방안('15.11.30)」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모범규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모범규준은 공고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다.

제3조(최초 정리계획 제출시기) 이 모범규준 시행 전에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6조제1항제1호의 정리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소규모 펀드 정리계획 제출 양식

<표1> 소규모 펀드 비율 현황(예상)

(기준 : 제출일 시점)

회사명	공모추가형 펀드수 (운용기준) (A)	소규모 펀드수 (B)	부실자산펀드수 (C)	증투법펀드 중 (구) 개인연금펀드 (D)	소규모 펀드비율(%) (B-C-D)/(A-C-D)

* 제6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별로 정리중인 소규모펀드 및 합병·모자형 전환 절차를 개시한 펀드 등을 감안한 예상 소규모펀드 비율을 작성

<표2> 소규모 펀드 이행계획

회사명	모자형 구조 해당 여부 ¹⁾	펀드명1 (운용펀드)	펀드명2 (자펀드)	펀드코드 ³⁾ (운용펀드)	펀드코드 ³⁾ (자펀드)	근거 법률 ⁴⁾	설정일	소규모 펀드가 된 시점 ⁵⁾	정리 계획 ⁶⁾	정리 예정일 ⁶⁾

- 1) 모자형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2) 펀드명1에 운용펀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펀드명 2에는 자펀드만 기재할 것. 모펀드에 해당하는 자펀드가 여러 개인 경우 모펀드는 한 번만 기재
- 3) 펀드 코드는 반드시 12자리 코드로 기재
- 4) 근거 법률은 “증투법”, “간투법”, “자본시장법” 중에 기재
- 5) YYYY-MM-DD 방식으로 기재
- 6) 정리계획은 “임의해지”, “소규모합병”, “모자형 이전” 중에 택1하여 기재할 것

소규모 펀드 이행실적 등 제출 양식

<표1> 소규모 펀드 비율 현황

(기준 : 제출일 시점)

회사명	공모추가형 펀드수 (운용기준) (A)	소규모 펀드수 (B)	부실자산펀드수 (C)	중투법펀드 중 (구) 개인연금펀드 (D)	소규모 펀드비율 (%) (B-C-D)/(A-C-D)

<표2> 소규모 펀드 이행실적

회사명	모자형구조 해당 여부 ¹⁾	펀드명1 (운용펀드)	펀드명2 (자펀드)	펀드코드 ³⁾ (운용펀드)	펀드코드 (자펀드)	근거 법률 ⁴⁾	정리 일자 ⁵⁾

- 1) 모자형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2) 펀드명1에 운용펀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펀드명 2에는 자펀드만 기재할 것. 모펀드에 해당하는 자펀드가 여러 개인 경우 모펀드는 한 번만 기재
- 3) 펀드 코드는 반드시 12자리 코드로 기재
- 4) 근거법률은 “중투법”, “간투법”, “자본시장법” 중에 기재
- 5) 정리일자는 YYYY-MM-DD 방식으로 기재